

# 계약 안내문

4-1생활권 세종 더샵 예미지

## ▶ 계약체결 일시 및 장소

| 계약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시간          | 장소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
| 2016. 12. 27(화) ~ 12. 29(목) (3일간) | 10:00 ~ 16:00 | 당사 견본주택 |

## ▶ 계약금 납부 계좌 및 계약금 납부 방법

| 구분  | 블록    | 계좌번호 | 납부은행            | 예금주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계약금 | 아파트   | L4블록 | 우리은행            | 국제자산신탁(주) |                 |
|     | 발코니확장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005-203-106953 |
|     | 아파트   | M3블록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005-403-106957 |
|     | 발코니확장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005-503-106942 |
|     |       |      | 1005-303-106948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※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·호수 7자리 또는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예시: 401동 1101호 : '4011101홍길동')

## ▶ 계약시 구비사항

| 구분  | 세부내용  |
|---|---|
| 아파트<br>구비사항   | <b>공통</b><br>1. 계약금(자기앞수표 1장) 또는 무통장 입금 확인증<br>2.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(단, 인터넷청약 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)<br>3.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1통(용도 : 아파트 계약용)<br>4.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(거주지역,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)<br>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<br>② 주민등록등본 1통<br>③ 주민등록초본 1통(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<br>④ 가족관계증명서 1통(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,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)<br>⑤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(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)<br>⑥ 계약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(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약자 / 직계존속의 과거 3년 주소변동내역 표시본)<br>⑦ 혼인관계증명서 1통(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가점에 포함한 세대에 한함)<br>⑧ 재외동포 :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(또는 국내거소 사실 증명서 1통)<br>⑨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<br>⑩ 무주택 서약서(당사 견본주택 비치) |
|   | <b>이전기관</b><br>특별공급 대상확인서 - 이전기관 발급(동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) ※기관의 관인날인된 서류에 한함   |
|   | <b>부적격<br/>통보를<br/>받은자</b><br>5.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<br>①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가옥대장 등본 포함)<br>②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<br>③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<br>④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|
| <b>대리인<br/>계약시</b><br>6.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함.<br>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(아파트 계약 위임용)<br>②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(당사 견본주택 비치)<br>③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|   |

※위 필요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해당됩니다.

※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, 더 정확한 내용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